

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아래참조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	
	국적	여권번호	
	주소		
반출 사항	반출지	반출일	
	반출목적		

신청내용					
측량성과 의 종류	도엽명	도엽별 일련번호	단위	수량	비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·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1. 보안각서 2. 여권 사본(외국인만 해당합니다) 3. 반출할 내용물(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: 2,000원
처리기간	1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: 10일 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: 60일	

